

달성군 공고 제 2026-1612호

2026년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구시 달성군은 관내 기업의 지역 청년 고용과 청년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23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명 : 청년 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 ☐ 사업목적 : 달성군 관내의 지역청년 고용증진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발굴 및 청년 고용 우수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지원
- ☐ 수행기관 : (재)대구테크노파크

2. 지원개요

-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자격요건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의 기업 중, 대상 업종이 '제조업' 영위 기업
 -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성군 관내 주소지의 청년을 2명 이상 채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
- ☐ 지원규모 : 15개사 이내
 - ※ 기업별 신청금액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8,000만원 이내
-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까지
- ☐ 지원내용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 비용 지원

3. 세부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8,000만원 이내 신규 채용인원 실적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채용인원	2명	3명	4명
지원금액	4,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최소 10% 이상은 기업에서 현금으로 부담(VAT도 기업부담)
- 기업별 신청내용 및 평가 등에 따라 지원 확정액은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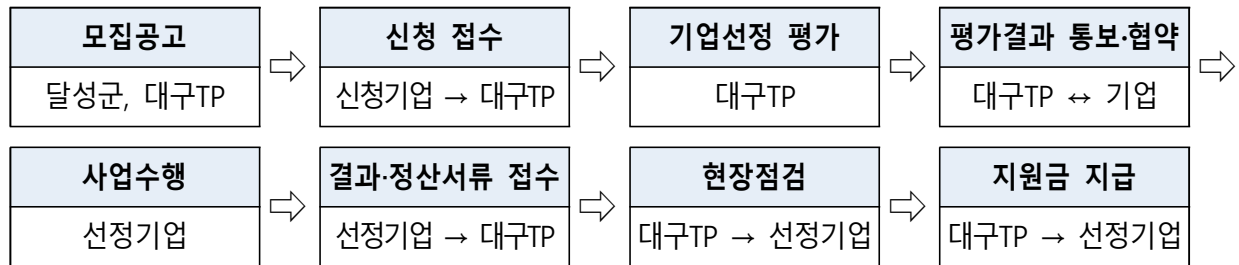
- 지원분야

- 공사비용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제외

구 분	지원내용
복지환경 개선	○ 휴게공간 인테리어, 기숙사, 구내식당, 카페테리아, 화장실, 샤워시설, 교육장, 체력단련시설 등 신설·개보수
근로환경 개선	○ 노후 작업장 개보수, 사무공간 인테리어, 회의실 신설 및 개보수, 내부 조명시설, 노후 전기설비 개보수, 집진 및 공조시설 등
외관환경 개선	○ 건물외벽 개보수 및 도색, 색채 디자인, 외부 조명시설 등
녹지환경 개선	○ 울타리 개보수, 조경시설 설치, 근로자 쉼터 등
안전환경 개선	○ 산재예방 설비, 화재예방 설비, 침수 예방설비 등
주차환경 개선	○ 주차장 개보수, 주차장 증설(지하, 옥상 등), 전기차 충전시설 등
물 품 구 입	○ 각 항목의 환경개선에 따른 물품구입 비용 지원 등 ※ 총 사업비의 10% 내에서만 물품지원이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물품 구입비용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공사의 경우 원가 산정 관련 세부 내역서 제출이 필수이며, 지원 시설 및 물품은 최소 3년을 유지하여야 함
 - 유지비용은 사업체가 개별 부담해야 하며, 사업주는 지원시설 및 물품 관리 대장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함
- 지원 시설은 사업 완료 후 3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기간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절차



4. 신규채용 청년 기준

- 청년범위 : 19세 이상 ~ 39세 이하(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인 자
-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주 35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 채용기간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신규 채용된 자
(예시 : '26. 8. 1. 사업신청 시, '25. 8. 2. ~ '26. 8. 1. 기간 내 채용자 인정)
- 채용전환형 인턴 또는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채용일이 채용기간 기준일 범위 내 정규직 전환이 될 경우 실적 인정
- 신규 채용 청년은 사업 신청일까지 신청 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최종 선정 통보 시까지 고용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거주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성군 청년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채용실적 제외대상
 - 재취업자 :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이력이 있는 자
 - 부적격자 :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4대보험 미가입자
 - 특수관계인 :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직계비존속, 형제·자매 등 친인척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방향 :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청년 고용 창출 및 복지향상 노력, 고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 선정
-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이에 따른 사업장 전반에 미치는 기대 효과를 토대로 사업의 목적상 부합여부 중점 검토
- 공사기간과 내용, 추진일정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확인과 시설 활용계획의 적절성이 우수한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

- 지원에 대한 근로자의 복지편익 및 근로환경 개선 효과, 달성군 소재 청년 채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절차

선정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서면심사	현장평가	심의평가
7/23 ~ 8/31	7/23 ~ 8/31	9월 초	9월 중순	9월말
달성군 & 대구TP	기업 → 대구TP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

※ 현장실태조사는 서면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교부처 : 달성군(dalseong.daegu.kr)/참여·소통/알림마당/고시·공고

대구테크노파크(dgtp.or.kr)/알림마당/사업공고

- 접수기간 : **2026. 7. 23.(목) ~ 8. 31.(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시 접수확인 전화요망

- 이메일(goodjob@dgtp.or.kr) 송부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1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 1부	서식 1
2	신청기업 활약사항	원본 1부	서식 2
3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활약 등 동의서	원본 1부	서식 3
4	신규 채용청년 현황	원본 1부	서식 4
5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2부 ①'26년 신청일 기준 명부 ②신청일 기준 1년 전('25년) 명부 ※ 예시 : 신청일이 2026년 8월 18일인 경우 ① 2026년 8월 18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② 2026년 8월 18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사본 각 1부	-
6	①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2부 (공사 및 물품구입 일괄) ② 세부 산출내역서(단가계산) ③ 설계도면 및 건축물 대장 ④ 시공업체의 관련면허(15백만원 이상 공사 해당시)	사본 각 1부	-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8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사본 각 1부	-
▶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https://plus.gov.kr/)에서 발급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 문의 및 상담 :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김민기 책임연구원(☎ : 053-757-3736 / E-mail : larme@dgtp.or.kr)

7. 유의사항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사전 판단하여 신청서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내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등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기 지급한 지원금 등은 환수조치 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점검 및 만족도 조사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신청 제외대상 (접수마감일 기준)

법규 위반 등 기타 제외 대상
① 국세 및 지방세, 근로자 4대 사회보험 체납기업
②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채불사업주 명단공개)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기업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 의거 명단이 공표된 기업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